

<p>됩니다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생략</p> <p>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3명,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)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620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2000. 7. 기획경제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6월 13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5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(2000년 6월 28일 상정,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석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p>하천법의 전문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</p>	의안 번호	620	<p>99명을 증원하여</p> <p>- 동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5,661명에서 15,760명으로 하고, 부칙 제2조에 규정된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총수(표1)는 16,369명에서 16,468명으로,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총수(표2)는 16,019명에서 16,118명으로 각각 조정하며,</p> <p>- 동조례 제2조와 부칙 제2조의 표1, 표2의 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4,881명에서 4,980명으로 하는 것으로</p> <p>○ 신설된 동작소방서는 정원을 109명(본서 37명, 직할파출소 53명, 119구조대 19명)으로 책정하여 99명은 순증원하고 부족인원 중 10명은 타 소방관서에서 보충하는 것으로서 기존 소방서의 평균인력이 138명(본서 61명, 직할파출소 58명, 119구조대 19명)임을 감안할 때 금번 정원조정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생략</p> <p>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 (재석위원 13명,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)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621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2000. 7. 기획경제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6월 13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5일 회부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(2000년 6월 28일 상정,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석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p>하천법의 전문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</p>	의안 번호	621
의안 번호	620				
의안 번호	621				